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03 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서영교·김문수·이해식

송재봉 • 윤준병 • 이광희

김준형 • 한민수 • 박홍배

임오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,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신청인은 불허 또는 조건부허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.

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,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 송기록 열람·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.

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재판장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,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,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자의 소송기록 열람·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94조의4). 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불복할 수 없다"를 "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"로 한다.

- ③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
- 1.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2.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(「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 을 말한다)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

⑤ 재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에 관한 적용례)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

개 정 안

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 록 열람·등사) ① · ② (생 략)

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, 심 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 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할 수 있다.

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 록 열람·등사) ① · ② (현행 과 같음)

- ③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
- 1.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피고인 또는 제3자의 명예나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는 경우
- 2.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 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) 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.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

④ (생 략) <신 설>

- ⑤ (생략)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<u>불복할 수 없다</u>.

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재판장이 제1항에 따른 신 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
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- <u>⑦</u> -----
- -----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